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66호 2025. 11. 20.(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사행계획 승인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5-145호)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사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5-146호)

공 고

- 「예천군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5-1533호)
-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5-1534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예 천 군 

- ①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②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승 인 조 서

사업명	위 치				승인 면적 (㎡)	사업기간	총소요 사업비 (천원)	사업시행자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 (개간)	예천	지보	도화	산33	29,980	(당초) 2025.06.19.~2025.10.31. (변경) 2025.06.19.~2026.10.31.	156,267	최진* 박미* 최원* 홍영*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변경 승인된 농업기반정비사업(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예 천 군 

- ①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②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 ③ 변경내용 : 공사계획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

승 인 조 서

사업명	위 치				승인 면적 (㎡)	사업기간	총소요 사업비 (천원)	사업시행자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 (개간)	예천	호명	백송	산5-1	29,950	(당초)2022.10.27.~2025.10.31. (변경)2022.10.27.~2026.10.31.	762,000	이 준 *

예천군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상위법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 및 추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안 제1조 ~ 제4조)
- 나.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저감대책 규정(안 제5조 ~ 제6조)
- 다. 예천군 소재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 사고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라.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을 위한 지역 주민 교육·홍보(안 제8조)
-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환경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yeoun818@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3) 팩스 : 054-650-61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전화: 054-650-61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인공구조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예천군의회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 및 추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에 관

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대책 실시) ① 군수는 야생동물의 충돌 및 추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제3항 및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실태조사 및 피해방지 조치 세부 지침」에 따른 방안을 다음 각 호에 적용하여야 한다.

1. 신규 또는 대규모 개축 인공구조물에 대한 설계 및 시공
2. 기존 인공구조물에 대한 충돌 방지사업의 시행
3. 기존 인공구조물에 대한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의 배포
4. 그 밖에 군수가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사업자에게 야생동물 충돌·추락 방지 방안 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군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인공구조물 외에 야생동물 충돌·추락이 예상되는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대책을 실시

하는 소유자 등에게 야생동물이 충돌·추락을 회피할 수 있는 설계디자인을 안내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군수는 예천군에 소재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충돌 및 추락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야생동물 연구 및 조사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역 주민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교류협력 등) 군수는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을 위해 관계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 시 피해보상 제외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신청서 서식을 개정하여 신청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 시 피해보상 제외대상 본인 확인란 신설(안 별지 제1호서식, 제4호서식)

4.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환경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yeoun818@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3) 팩스 : 054-650-61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전화: 054-650-61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 신고서				
피해농업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피해현황	피해지역	예천군	읍·면	리 번지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기간	. . . ~ . . . (일간)		
	경작지면적	m ²	피해면적	m ²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본인은 아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보상금 지원이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1. 당해연도에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2. 최근 5년 이내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3.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작물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4.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확인자 : (인) 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피 해 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주 소	예천군 읍·면	
피해보상금 산정결과	④ 피 해 보 상 금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본인은 위 피해보상금과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금을 중복수령한 것이 확인될 경우 피해보상금 일체를 반납하겠습니다. 확인자 : (인)			
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지서 사본			